KOSHA GUIDE A - 45 - 2018

안티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·분석 기술지침

2018. 11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은교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

- 제·개정 경과
- 2012년 5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15년 4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2018년 10월 산업위생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,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(NMAM®), 5th ed, www.cdc.gov/niosh/nmam
-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(U.S.A),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, www.osha.gov/dts/sltc/methods/index.html
- Health and Safety Executive (U.K.),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(MDHS) guidance, www.hse.gov.uk/pubns/mdhs/
-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(ACGIH):
 Documentation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,
 7th Ed, 2018.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-27호 (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)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2호 (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 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공표일자 : 2018년 11월 27일
- 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A - 45 - 2018

안티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·분석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(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)의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자 중 안티몬과 그 화합물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할 때 정확도 및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중 안티몬과 그 화합물의 측정, 분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- (가) "밀폐"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상태에서 고형(固形)의 이물(異物)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상태를 말한다.
- (나) "밀봉"이라 함은 취급 또는 보관상태에서 기체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.
- (다) 중량을 "정확하게 단다."라 함은 지시된 수치의 중량을 그 자릿수까지 단다는 것을 의미한다.
- (라) "약"이란 그 무게 또는 부피에 대하여 ±10% 이상의 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.
- (마) 시험조작 중 "즉시"라는 용어는 30초 이내에 표시된 조작을 하는 것을 말한다.
- (바) "검출한계"라 함은 주어진 분석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검출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농도나 양을 의미한다.
- (사) "정량한계"라 함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정량할 수 있는 분석대상물질의 가장 최소의 양으로, 단지 검출이 아니라 정밀도를 가지고 정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농도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검출한계의 3배 수준을 의미한다.
- (아) "회수율"이란 채취한 금속 등의 분석 값을 보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, 시료채취 매체와 동일한 재질의 여과지에 첨가된 양과 분석량의 비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.

A - 45 - 2018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고시제 2017-27호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일반사항

- (1) 이 시험법에 필요한 어원, 분자식 및 화학명 등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() 내에 기재한다.
- (2) 원자량은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협회(IUPAC)에서 제정한 원자량 표에 따른다. 분자량은 소수점 이하 제 2단위까지 하고 제 3단위에서 반올림한다.
- (3) 이 시험법에 규정한 방법이 분석 화학적으로 반드시 최고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며, 이 시험방법 이외의 방법이라도 동등이상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- (4) 이 시험방법에 표시한 사항 중 탈착율, 검출한계 등은 각조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을 참고하도록 표시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 값이 분석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(5) 시료의 시험, 바탕시험 및 표준액에 대한 일련의 동일시험을 행할 때 사용하는 시약 또는 시액은 동일 롯트(LOT)로 조제된 것을 사용한다.
- (6) 이 시험법에 사용하는 수치의 맺음법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한국산업의 규격 KS Q 5002(데이터의 통계적 해석방법)에 따른다.
- (7) 이 시험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화학적 상식에 따르되, 이 시험법에 기재한 방법 중 세부조작은 시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험자가 적당히 변경 조절할 수 있다.
- (8) 단위 및 기호 : 길이, 넓이, 부피, 농도, 압력 또는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.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단위는 KS A ISO 80000-1(양 및 단위-제1부: 일반사항)에 따른다.

종류	단위	기호	종류	단위	기호
	미터	m		몰농도	M
	센티미터	cm		노르말농도	N
길이	밀리미터	mm	농도	밀리그램/리터	mg/L
	마이크로미터	μm		마이크로그램/밀리리터	μg/mL
	나노미터	nm		퍼센트	%
	기압	atm	부피	세제곱미터	m³
압력	수은주밀리미터	mmHg		세제곱센티미터	Cm³
	수주밀리미터	mmH2O		세제곱밀리미터	mm³
	제곱미터	m²	무게	킬로그램	kg
넓이				그램	g
祖り	제곱센티미터	Cm²		밀리그램	mg
	제곱밀리미터	mm²		마이크로그램	$\mu\mathrm{g}$
	리터	L			
용량	밀리리터	mL			
	마이크로리터	μL			

(9) 온도

- (가) 온도의 표시는 셀시우스(Celsius) 법에 따라 아라비아숫자 오른쪽에 ℃를 붙인다. 절대온도는 K로 표시하고 절대온도 0 K는 -273℃로 한다.
- (나) 상온은 $15\sim25$ °C, 실온은 $1\sim35$ °C, 미온은 $30\sim40$ °C로 한다. 냉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°C 이하의 곳을 뜻한다.

(10) 농도

- (가)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 또는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질량을 표시할 때에는 중량/부피(w/v)%의 기호를 사용한다. 액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, 기체 단위부피중의 성분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부피/부피(v/v)%의 기호를 사용한다. 백만분의 용량비를 표시할 때는 ppm(part per million)의 기호를 사용한다.
- (나) 공기 중의 농도를 mg/m³으로 표시했을 때의 m³은 정상상태(NTP, Normal Temperature and Pressure : 25℃, 1기압)의 기체용적을 뜻한다. 따라서 노출 기준과 비교 시는 작업환경 측정 시의 온도와 압력을 실측하여 정상상태의 농도로 환산하여야 한다.

A - 45 - 2018

(11) 시약, 표준물질

- (가) 분석에 사용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화학용 시약에 규정된 일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 분석에 사용하는 시약은 제조회사에서 표시하는 농도함 량을 따른다.
- (나) 광도법, 전기화학적분석법, 크로마토그래피법,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에 쓰이는 시약은 특히 순도에 주의해야 하고,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을 함유할 염려가 있을 때는 미리 검정하여야 한다.
- (다) 분석에 사용하는 지시약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KS M 0015(화학 분석용 지시약 조제방법)에 규정된 지시약을 사용한다.
- (라) 시험에 사용하는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특급시약을 사용하며, 표준용액을 조제하기 위한 표준용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적절히 보관되어 오염 및 변질이 안 된 상태로 보존된 것을 사용한다.
- (12) 측정·분석 방법에 사용하는 초순수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정제증류수 또는 이온교환수지로 정제한 탈염수(脫鹽水)를 말한다.

(13) 기구

- (가) 계량기구중 측정값을 분석결과의 계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보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나) 중량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^{-5} g(0.01 mg)까지 달수 있어야 하며, 화학분석 용 저울은 적어도 10^{-4} g(0.1 mg)까지 달 수 있어야 하며,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.
- (다) 이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모든 유리 기구는 KS L 2302(이화학용 유리기구의 모양 및 치수)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검정을 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라) 여과용 기구 및 기기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"여과한다."라고 하는 것은 KS M 7602(거름종이(화학 분석용)) 거름종이 5종 또는 이와 동등한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함을 말한다.

5. 시료채취 및 분석 시 고려사항

(1) 시료채취 기구 및 측정방법의 선택 시료채취의 목적과 시료채취시간, 방해인자, 예상되는 오염농도 및 실험실에서 보

A - 45 - 2018

유하고 있는 분석장비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료채취기구 및 분석방법을 선택한다.

(2)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용액제조

(가) 대상물질의 특성파악

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표준용액을 만들 원액(시약)의 순도와 특성(분자량, 비중, 노출기준)을 파악한다.

- (나) 채취시료 노출기준의 0.1~2배 수준에서 각 분석대상물질의 양을 결정한다.
- (다) 표준용액 제조방법의 결정

일반적으로 표준용액 제조시 표준원액(stock solution)을 단계적으로 희석시키는 방법(희석식)과 표준원액에서 일정량씩 줄여 가면서 만드는 방법(배치식)이었다. 희석식은 만들기가 수월한 반면 표준원액이 잘못되면 계통오차를 줄 수있고 배치식은 여러 검량선 작성용 용액 중 몇 개가 잘못되더라도 이를 보정할 수가 있으나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.

(라) 표준용액의 제조

충분한 수의 표준용액을 준비한다.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농도를 포함한 최소한 5개 수준의 표준용액을 제조한다.

- (마) 검량선의 작성시 주의점
 - ① 표준원액으로 사용될 원액의 순도, 제조일자, 유효기간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.
 - ② 표준용액, 회수율 등에 사용되는 시약은 같은 롯트(Lot)번호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 검량선은 시료 분석조건과 주입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량선이 적정하다고 판정하면 시료를 분석한다. 검량선은 분석할 시료의 농도를 포함해야 하며, 검량선에 사용된 표준용액의 농도보다 높은 시료의 경우는 희석하여 재분석 하거나시료농도를 포함할 수 있는 표준용액을 추가로 제조하여 검량선을 다시 작성한다. 검량선의 적정성은 제시된 분석기기의 매뉴얼을 참조하거나 상관계수가 0.99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.

(3) 회수율 검정을 위한 시료제조 및 회수율 계산방법

회수율은 여과지를 이용하여 채취한 물질의 분석값을 보정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동일한 여과지에 첨가된 양과 분석량의 비로 표현된 값을 말한다. 이 실험을 통하여 여과지의 오염, 시약의 오염, 여과지에 대한 시료채취 효율 등을 알 수 있다. 시료 배치 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야 한다.

A - 45 - 2018

- (가) 회수율 실험을 위한 첨가량을 결정한다. 작업장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예상되는 농도(mg/m³)와 공기채취량(L)에 따라 첨가량을 계산한다. 만일 작업장의 예상 농도를 모를 경우 첨가량은 노출기준과 공기채취량 240 L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 계산된 첨가량 3개 농도 수준(0.5~2배)의 양을 반복적으로 3개(3수준 × 3 반복 = 9개) 주입할 여과지와 공시료 3개를 준비한다.
- (나) 분석대상물질의 원액 또는 희석액 일정량을 마이크로피펫 또는 마이크로시린 지를 이용하여 여과지에 주입한다.
- (다) 여과지를 밀봉하고 하루 동안 상온에 놓아둔다.
- (라) 여과지를 바이알에 넣고 추출용액으로 추출한다.
- (마) 시료를 분석하여 검출량을 구한다.
- (바) 다음 식에 의해 회수율을 구한다. 회수율 = 분석량 / 첨가량
- (사) 회수율은 최소한 0.75 이상이 되어야 하나 0.90 이상이면 좋다. 회수율에 대한 평가는 분석자가 해야 한다. 즉 12개의 회수율 실험결과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회수율간의 일정성이다. 만일 회수율간의 차이가 크고 변이가 심하여 일정성이 없으면 정확한 보정이 될 수가 없다. 따라서 그 원인을 찾아 교정하고 다시 실험을 실시해야한다.



안티몬(Antimony and its Compounds, as Sb)

원자기호: Sb 원자량: 121.75 CAS No.: 7440-36-0

녹는점: 630℃ 끓는점: 1635℃ 비 중: 6.69 용 해 도: Insoluble

특징, 발생원 - 광택이 나는 흰색 고체, 냄새가 나지 않음

및 용도: - 고무, 착색제 및 촉매제, 도기, 반도체 기구, 축전지, 활자합금에 주로 사용

. ネッス	고용노동부 (mg/m³)	0.5	OSHA (mg/m³)	0.5
노출기준	ACGIH (mg/m³)	0.5	NIOSH (mg/m³)	0.5

동의어: 안티모니

분석원리 및 적용성: 작업환경 중 대상물질을 여과지에 채취하여 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계(ICP-AES)를 이용하여 정량한다. 적용농도는 공기량 500 L에서 0.005-2.0 mg/m³이다. PVC 필터로는 완전하게 회화되지 않는다.

	시료채취 개요		분석 개요
	시료채취매체: 막여과지 (0.8 um cellulose ester membrane or 5.0 um polyvinyl chloride membrane) 유량: 1~4 L/min 공기량 -최대: 2,000 L -최소: 50 L (at 0.5 mg/m³) 운반: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 시료의 안정성: 안정함 공시료: 시료 세트당 2~10개의 현장 공시료		분석기술: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법 (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scopy) - 파장: 206 nm 분석대상물질: 안티몬 (Sb) 전처리: 회화용액(진한질산 1 mL, 진한염산 3 mL)을 첨가하여 가열판에서 증발시켜면서 회화시킴 최종용액: 5% 왕수, 25 mL 범 위: 2.5~1000 ug/시료 검 량 선: 4% 질산용액, 1% 과염소산용액
		•	검출한계 : 0.192 ug/시료 정 밀 도 : 0.038(0.5-1.0 ug/mL)
	방해작용 및 조치		정확도 및 정밀도
•	스펙트럼 방해작용은 신중한 파장 선택, 물질상 호간의 교정과 공시료교정으로 최소화 할 수 있다.		



	시약		기구
•	질산(특급)	•	시료채취매체: 막여과지(cellulose ester filter,
•	염산(특급)		공극 0.8 um, 직경 37 mm, polyvinyl chloride,
•	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(1,000 ug/mL) : 표준		공극 5.0 um, 직경 37 mm), 카세트 홀더
	품을 구입하거나 조제함.	•	개인시료채취펌프(유연한 튜브관 연결됨), 유량
•	회화용액(왕수) : 진한질산:진한염산=1:3의 비율로		1∼4 L/min
	혼합	•	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분광계 (Inductively
•	희석용액(1% 질산, 3% 염산) : 50 mL 회화용		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
	액을 증류수 600 mL에 첨가한 후 증류수를 가		Spectrometer)
	해 1 L로 희석시킨다.	•	아르곤 가스 2단 레귤레이터
•	아르곤	•	125 mL 또는 50 mL 비이커, 시계접시 뚜껑
•	증류수 또는 탈이온수	•	10 mL, 25 mL, 100 mL 및 1 L 용량 플라스크
		•	피펫
		•	가열판(표면온도 150℃)
		 **	모든 유리기구는 사용 전에 질산으로 씻고
			증류수로 헹구어 준다.
			011 - 01 1 - 1.
	특별 안전보건 예방조치: 모든 산 회화작업은 과역	 념 수	·사 흉후드에서 이루어져야 하다 ('V 비고' 참고)

I. 시료채취

- 1. 시료채취매체를 이용하여 각 개인시료 채취펌프를 보정한다.
- 2. 1~4 L/min의 정확한 유량으로 총 50~2,000 L의 공기를 채취하며,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가 총 2 mg을 넘지 않도록 한다.
- 3. 채취가 끝난 여과지는 밀봉하여 먼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카세트를 바로 세워서 운반한다.

II. 시료 전처리

- 4. 카세트필터 홀더를 열고 시료와 공시료를 깨끗한 비이커로 옮긴다.
- 5. 회화용액 5 mL를 넣고 시계접시를 덮은 후 30분 간 상온에 방치한다.
- 6. 용액이 0.5 mL 남을 때까지 가열판(120℃)에서 가열한다.
- 7. 회화용액 2 mL를 비이커에 첨가하고 다시 0.5 mL 남을 때까지 가열한다. 이 단계를 용액이 투명해 질 때까지 반복한다.
 - ※ PVC 필터로는 완전하게 회화처리 되지 않는다.
- 8. 시계접시를 제거한 후 증류수로 헹구어 비이커에 담는다.
- 9. 가열판 온도를 150℃까지 올리고 이 용액이 0.5 mL정도가 될 때까지 증발시킨다.
 - ※ 만약 잔류 유기물이 발생하면 희석용액 2∼3 mL를 비이커에 가해 잔류물을 희석시킨다.
- 10. 위 혼합물이 식을 때까지 놔둔다.
- 11. 용액을 25 mL 둥근 플라스크에 옮겨 담는다.
 - ※ 만약 더 세밀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로 10 mL 눈금까지 희석한다.



III. 분석

【검량선 작성 및 정도관리】

- 12. 검량선용 용액을 저농도 용액부터 플라즈마 내로 주입하고 각 용액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.
- 13. 표준용액을 공시료 및 시료와 함께 분석한다.
- 14. 검량선 그래프를 작성한다.
 - ※ 이때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. 검량선용 공시료의 흡광도를 다른 검량선용 표준 용액의 흡광도에서 뺀 후 검량선을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.
- 15. 한번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보통 10개의 시료를 분석한 다음, 표준용액으로 분석기기 반응에 대한 재현성을 점검한다. 재현성이 나쁘면 검량선을 다시 작성하고 시료를 분석한다.
 - ※ 표준용액의 흡광도가 공시료 내에서 기기 검출한계의 3배를 넘거나, 그 변화가 ±5%를 초과했다면 교정조치를 취하고 기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(reslope facility) 검량선을 다시 작성하여 시료를 분석한다.
- 16. 시료채취매체에 기지량의 분석대상물질을 첨가한 시료(spike 시료)로 아래와 같이 회수율 (recovery) 시험을 실시하여 현장 시료 분석값을 보정한다.

<회수율 시험>

- 1. 예상 시료량이 포함되도록 3가지 이상의 수준 및 각 수준별로 3개 이상의 spike 시료를 만든다.
- 2. 하룻밤 방치한 후 'II. 시료전처리' 과정과 동일하게 전처리하고 현장 시료와 동일하게 분석한 후 회수율을 구한다.
- 3. 2에서 구한 회수율을 계산식에 적용하여 시료의 분석값을 보정하며, 수준별로 회수율의 차이가 뚜렷하면 수준별로 보정한다.
- ※ 참고: PVC 필터보다 MCE 필터가 더 좋은 회수율을 얻을 수 있다.
- 17. 방해 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끔씩 표준용액 첨가법(method of standard additions)을 사용한다.

【분석과정】

- 18. ICP-AES 제조사의 권고와 "분석개요"에 제시된 바에 따라 기기의 조건을 설정한다.
- 19. 적당한 비율로 표준용액을 희석하여 분석대상의 검출한계와 근접한 농도로 시험용액을 준비한다. '12'에 제시되어 있는 검량선용 용액 조제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른다.
- 20. 시험용액을 플라즈마 내로 주입하여 용액을 각각 분석한다.
- 21. 시험용액을 최소한 10회 연속적으로 분석하며, 평균농도에 대한 표준편차의 3배를 분석대상 금속의 검출한계로 계산한다.
- 22. 흡광도 기록을 저장한다.
 - ※ 참고: 만약 시료의 흡광도 값이 검량선 그래프 직선보다 위에 있다면 그 용액을 희석하거나 더 작은 양의 시료를 넣은 후 재분석하여 희석계수를 적용한다.



IV. 계산

23. 측정된 흡광도를 이용하여 시료의 안티몬 농도 (C_s) 와 공시료의 평균값 (C_b) 을 계산한다.

24. 시료 및 공시료의 용액 부피 (V_s,V_b) 를 이용하여 채취된 공기중(V) 안티몬의 농도(C)를 계산한다.

25. 다음 식에 의하여 해당물질의 농도를 구한다.

$$C = \frac{C_s V_s - C_b V_b}{V \times R} \ (mg/m^3)$$

 $\cdot C_s$: 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(ug/mL)

 \cdot C_b : 공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(ug/mL)

 $\cdot V_{\circ}$: 시료에서 희석한 최종용량(mL)

 V_h : 공시료에서 희석한 최종용량(mL)

· V : 공기채취량(L)

· R : 회수율

V. 비고

- 이 방법은 NIOSH Method 7301에 기초하였고, NIOSH P&CAM 261, OSHA Method ID-121, OSHA Method ID-125G, HSE MDHS 91, ISO 15202-3, 15202-2의 내용과 비교한 후 작성하였다.
- 다른 방법: NIOSH P&CAM 261과 OSHA Method ID-121은 원자흡광광도계법(AAS)으로 분석하였고, HSE MDHS 91은 X-선형광분석법(XRF)으로 분석하였다.
- 건강영향 및 예방조치: 단기 노출증상으로 눈과 피부의 자극, 피부발진, 기침, 복통 등이 있고, 만성 건강영향으로 두통, 불면증, 현기증, 궤양, 체중감소, 구역, 구토, 설사, 생식독성, 암 등이 있다. 특히 산을 취급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보안경, 글러브, 실험복 등과 같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
VI. 참고문헌

- 1.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2호,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, 2018.
- 2.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(ACGIH): Documentation of the Threshold Limit Value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, 8th 7th Edition, 2011. 2018.
- 3. Health and Safety Executive(HSE):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Hazardous Substances(MDHS), Method 91, Metals and metalloids in workplace air by X-ray fluorescence spectrometry, 1998.
- 4.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: ISO 15202-3:2004, ISO 15202-2:2001, 2001, 2004.
-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(NIOSH):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, Method #7301, 2003.
- 6.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(NIOSH): NIOSH pocket guide to chemical hazards and other databases, 2010.
- 7.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: Index of Sampling & Analytical Methods, Method ID-121, 2002.
- 8.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: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(OSHA): Standards 29 CFR 1910.1000,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s Table Z Limits for Air Contaminants, 2006.